

2021년도 제7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4. 15.(목),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71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494건(안건번호 제2021-36539호~37076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36539호~36566호(순번 1번~28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방송과 만화를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방송과 만화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36567호(순번 29번)는 블로그에 영화상영관에서 녹화한 영화의 영상 및 사진을 감상평과 함께 게시한 사안으로, 현재 해당 불법복제물이 삭제되어 저작권 침해 상태가 해소되었으나 저작권법에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는 영화상영관에서의 녹화영상물을 전송하여 저작권법 준수를 계도할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36568호~37076호(순번 30번~538번)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1,459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79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7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제1호 안건에서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부분인 8쪽부터 12쪽까지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심의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람.

- A, B, C, D 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2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494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순번은 1번~538번

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번~28번은 실명(1명)과 익명(1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불법 복제한 방송과 만화를 유료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웹하드 사이트에서 방송 '○○○○', '△△△△', '□□□□', 등 10건과 만화 '●●●●', '▲▲▲▲', '■ ■ ■ ■' 등 24건을 각각 30포인트에서 270포인트 정도에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총 34개의 게시물임.

(순번 3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방송 저작물을 90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총 1편을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순번 20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만화 저작물을 50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총 3권을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순번 28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만화 저작물을 30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총 27화를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1번~28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일부 게시물의 게시자명이 다 보이지 않고 별 표시(*)로 처리된 이유가 무엇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OSP가 자사의 온라인 서비스 운영정책에 따라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 A 위원: 해당 저작물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방송과 만화입니다.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입니다.
- D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가결 의견입니다.
- B, C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입니다.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28번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합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9번은 익명(1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 블로거 '☆☆☆
☆☆'가 극장 상영 중인 영화 '★★★★★'의 1분 내외의 영화관 상
영 화면을 직접 촬영 후 게시하고, 역시 영화관에서 상영중인 화면
사진을 이용하여 영화를 소개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임(1건).

(순번 29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
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저작권법 제104조의6, 제137조 제1항 제3호의
3). 일명 '도촬 금지' 규정은 휴대용 디지털 영상촬영 기기의 발달로
인하여 영화 개봉과 동시에 영상저작물이 관객에 의하여 무단으로
녹화되어 인터넷 등을 통하여 무차별 유포되는 경우 영상제작자 등
관련 권리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
가 있다는 배경에서 입법된 것임. 해당 규정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
는 영화 유통 구조의 특성 및 저작권의 제한사유로 사적복제 규
정을 두고 있는 우리 저작권법 체계를 고려하여 제136조 제1항 제1
호의 저작권 침해 일반규정과 별도로 규정된 것이며, 은밀히 이루어
지는 도촬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보호원이 증거자료를 수집한 2021. 4. 8. 16:40 기준으로 게시자가 게
시한 녹화 영상은 1:00 분량, 1:02 분량 총 2건이고, 영화관에서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정지화면 사진이 함께 확인되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 포함된 영상 및 사진이 영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
지 않으며, 일반적인 경우라면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 또는 제35조
의5의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고려할 수 있음. 그러나 심의대상 게시
물의 경우 위와 같은 저작권법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일반적인 인

용 및 공정이용의 법리를 전제하여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이 낮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짐. 비록 보호원의 시정권고는 형사처벌과 무관하나,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법에서 특별히 금하고 있는 위법행위의 표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법 준수를 요청할 필요성이 요구됨.

다만 2021. 4. 9. 사무처에서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한 결과, 영화상영관에서 촬영한 영화저작물의 영상 및 사진은 삭제되어 있고, 제작사에서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 공식 포토 및 예고편 영상, 영화 상영 종료 후 직접 촬영한 무대인사 영상 등으로 대체된 것이 확인됨. 공식 포토 및 예고편 영상의 경우 ① 영화 홍보 목적으로 권리자에 의해 제공된 저작물을 그 제공 목적에 부합하게 이용하여 영화의 감상평과 무대인사 감상 등을 기재하고 있으며(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② 그 이용 분량이 영화의 극히 일부분이고(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③ 해당 이용이 합법 시장에서의 영화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됨(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현 상태에서 저작물의 이용은 인용 또는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저작권 침해의 위법상태가 제거된 현재의 심의 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으나,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어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29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현재 해당 영화 불법복제물이 삭제되었으나, 위법성이 현저한 도촬의 결과물이 확인되었으므로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기존의 동영상 게시 행위에 대한 경고 가결임을 네이버에 전달할 필요가 있음.
- B, C, D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9번에 대해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순번 30번~538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서치'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26번은 모바일웹

하드에서 영화 '서치'를 370포인트에 제공 중임. 전체분량인 1시간 42분을 제공하고 있음. 소니 픽처스에서 2018. 8. 29. 개봉한 미국 영화임.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영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34번은 웹하드에서 영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을 310포인트에 제공 중임. 전체분량인 2시간 1분 27초를 제공하고 있음. 그린나래미디어(주)에서 2020. 1. 16. 개봉한 프랑스 영화임.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방송 '마우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416번은 모바일 웹하드에서 방송 '마우스'를 150포인트에 제공 중임. 제6화의 전체분량인 1시간 20분 39초를 제공하고 있음.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자타 공인 바른 청년이자 동네 순경인 정바름과 어린 시절 살인마에게 부모를 잃고 복수를 향해 달려온 무법형사 고무치가 사이코패스 중 상위 1퍼센트로 불리는 가장 악랄한 프레데터와 대치 끝에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모습을 그려낸 본격 인간 헌터 추적극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순번 30번~538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순번 30번~538번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0번~538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36539호~36566호(순번 1번~28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제2021-36567호(순번 29번)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제2021-36568호~37076호(순번 30번~538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7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7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4. 22.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김연희